

보건·복지 ISSUE & FOCU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ISSN 2092-7117
제 263호 (2014-42) 발행일 : 2014. 10.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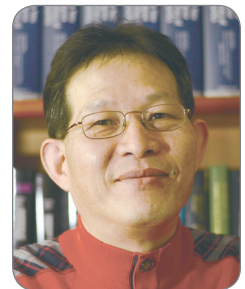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사회적경제와 지역재생

최근 정부는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모색하고 있음

이 정책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설립을 촉진할 사회적경제 금융조직을 육성하고,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통해 이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관련 기업의 경영혁신을 도울 지원기관을 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하지만 정부의 지원정책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자발성과 혁신성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특히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조직으로 성장하고, 지역재생이라는 구체적인 사업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와 협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하는 것임. 이 점에서 사회적경제와 지역재생 전략을 결합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준비할 시점임



노대명
사회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

1. 논의배경

■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기업은 이미 우리에게 친숙한 조직들임

- 사회적경제란 민주적 의사결정과 공정한 수익배분의 원칙에 따라 활동하는 시민사회의 경제영역을 지칭함. 쉽게 말해서, 돈보다는 우애와 협동을 강조하는 조직과 사람들의 영역을 총칭하는 것임. 비영리부문이나 제3섹터 등도 유사한 개념임
- 사회적경제는 정부와 시장이 외면했거나 그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빈곤과 사회적배제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 존재 자체로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는 것임

○이러한 이유에서 정부가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육성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당연하고 바람직한 일임

■ 최근 정부와 정치권은 사회적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제도개편을 논의하고 있음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논의는 여당이 발의했던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야당이 발의했던 <사회적가치기본법> 등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

○이러한 제도개편 논의는 2014년 우리 사회적경제가 직면한 문제점과 정책과제를 잘 보여주고 있음. 하나는 사회적경제 기업을 육성할 물적 토대를 구축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경제가 고수해야 할 목표와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임

■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정부지원의 효과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사회적경제는 나눔과 자원봉사 그리고 연대를 통해 실업과 빈곤 등 외부에서 야기된 경제사회적 문제를 해결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비용을 내재화>하는 강점을 가짐

○사회적경제가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힘은 높은 수익실현이나 정부의 재정지원이 아니라 지역을 기반으로 형성된 생산과 소비의 상생적 순환구조, 그리고 연대와 협력을 통해 형성된 사회자본(Social Capital)에서 생겨나는 것임

○정부의 지원정책 또한 이러한 강점을 살린다는 전제에서만 그 의미를 가짐. 만일 지원정책이 사회적경제 기업들에게 정부에 대한 의존성을 심화시키거나, 저임금 일자리를 확산시킨다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임

2.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다양한 발전경로

■ 사회적경제 개념은 시공간의 제약 속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음

○사회적경제 개념에 대한 고전적 정의는 1980년 발표된 <사회적경제 헌장>(Charte de l'Economie sociale)에서 확인할 수 있음¹⁾

- 이 헌장은 민주적 의사결정(제1조), 수익의 공정한 배분 및 공익을 위한 투자(제5조), 인간 중심의 가치지향(제6조 및 제7조) 등을 사회적경제의 핵심가치로 규정하고 있음

○1990년대 이후에는 새로운 사회적경제(New Social Economy)를 표방하는 조직들²⁾이 출현 하게 됨. 사회적경제의 외연이 넓어지는 변화가 발생한 것임.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것이 드푸르니(J. Defourny)의 개념정의임³⁾. 그에 따르면 사회적경제란

1) <사회적경제 헌장>은 사회적경제 조직들 중 서로 다른 입장을 대표하던 프랑스 사회적경제 전문가와 연대경제 전문가들이 모인 전국단위 협의체인 CNLAMCA(Comité National de Liaison des Activités Mutualistes Coopératives et Associatives)가 1980년 발표한 것임

2) 전통적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19세기부터 오랜 역사를 가진 협동조합(Cooperatives), 공제조합(Mutuals), 재단(Foundations) 및 결사체(Associations) 등을 지칭하며, 새로운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1990년대 이후 출현한 사회적협동조합(Social Cooperatives),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s), 공동체 기업(Community Interest Company) 등을 지칭함. 전자와 비교할 때, 후자는 개방성과 공익성 그리고 정부와의 협력적 관계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음

3) Jacques Defourny et al.(2000), Social Economy: North and South, Liege, Centre d'Economie Sociale

- 이념적으로는 인간을 그 중심에 둔 경제영역을 지칭함. 자본의 이익보다는 일자리 창출과 이를 통한 사회적 연계를 중시하는 것임
- 기능적으로는 ①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갖추고, ②수익배분을 제한하는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조직들의 활동영역을 지칭하는 것임
- 법률적으로는 특정한 법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조직들의 활동영역을 지칭함. 그것은 법적 지위를 갖는 협동조합, 공제조합, 재단, 결사체(Associations), 최근 등장한 사회적협동조합(Social Cooperatives)과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s) 등을 지칭함

■ 사회적경제 개념은 지역에 따라 다른 용어로 사용되기도 함⁴⁾

- 유럽대륙 국가들이 비영리민간단체(NPO) 외에 협동조합이나 공제조합 등을 포괄하는 사회적경제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면, 영미국가들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등을 배제한 비영리부문(Non-Profit Sector) 개념을 사용하고 있음
- 최근 유럽 사회적경제 내부에서는 개념의 분화가 목격되고 있음. 2000년대 초반까지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이 사회적경제의 기업을 대표하는 용어였다면, 지금은 다양한 사회적경제 기업 중 수익성을 강조하는 기업으로 간주되고 있음⁵⁾
- 사회적경제 관련 후발국가들은 많은 혼돈을 경험하고 있음. 특히 그 경제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사회적경제 기업들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정부나 시장에 대한 편향성이 심화되는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음

■ 한국은 협동조합 등 전통적인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그 본연의 원칙과 가치를 상실하고 영리기업과 다를 것이 없게 왔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 1990년대 후반에 발표된 한 문건은 당시의 협동조합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음⁶⁾
- ①하향식 조직과 권력의 간섭, ②관료주의와 보수성, ③신용사업 제일주의, ④협동조합 본래 기능인 생산, 구매, 판매, 유통사업의 열위, ⑤농축산물 수급과 가격조절기능의 취약성, ⑥품목별, 축종별, 업종별 전문조합의 취약성, ⑦협동조합 운동가 및 사업별 전문가 부족과 교육체계 부실, ⑧조합원의 소외와 여성농민의 참여 곤란, ⑨WTO체제 하에서 수입농축산물에 대한 방어력 부재, ⑩지속 가능한 환경농업의 실천 부족, ⑪협동조합의 정신적, 문화적 기여 부족, ⑫농촌복지증진과 후생사업의 전무(全無), ⑬도·농 협력사업이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점
- 오래전 언급된 문제점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 협동조합은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에 봉착해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임. 그렇다면 정부의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일 이상으로 이 오래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4) 노대명·김신양·장원봉·김문길(2010), 제3섹터 육성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실제로 유럽각국의 전문가들은 사회적경제 기업(Enterprise of Social Economy)이라는 표현을 통해 사회적기업이 여러 유형의 사회적경제 기업 중 하나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그리고 이는 현재 우리사회에서도 적실성을 갖는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음
 6) 전농(1999), "한국협동조합의 현황과 문제점", 기타 사항은 확인할 수 없음

- 1990년대 중반이후 출현한 새로운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매우 역동적이지만, 경제사회적기반이 취약하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음⁷⁾
 -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함께 시작된 자활사업과 자활공동체는 생산공동체 운동의 경험을 일부 계승해 왔다는 점에서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간주해도 무방할 것임. 하지만 자활공동체는 근로연계복지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면서 재정지원에 크게 의존해 왔음
 - 2006년 제정된 사회적기업육성법은 사회적경제를 정책의제로 부각시키는 중요한 기여를 하였음. 하지만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정부 지원과 규제>라는 양 날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했음. 이 점에서 자활공동체의 문제점을 함께 경험하고 있는 것임
 - 2011년 말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은 사회적협동조합을 공식화하는 등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법률을 형식적으로 완비하는 계기를 마련했음. 하지만 법률의 형식은 완성했지만 작가 이 조직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해 왔음
 - 이처럼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위상을 규정하는 각종 법률이 완비됨에 따라, 공공기관 우선구매나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자금 및 경영지원을 강화하려는 정책이 검토되고 있음

3. 사회적경제의 현황 진단

- 한국의 사회적경제가 그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는 별 다른 이견이 없음
 - 유럽 사회적경제의 고용규모는 국가 간 편차에도 불구하고 매우 높은 수준
 - CIRIEC이 수행했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9년~2010년 유럽 15개국의 사회적경제 부문 일자리가 전체 임금부문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41%⁸⁾
 - 프랑스의 경우, 2013년 현재 사회적경제 조직은 약 20만 개이며, 유급근로자는 236만 명에 이르고 있음. 그리고 사회적경제의 고용규모는 전체 임금부문 일자리의 12.6%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⁹⁾
 - 한국 사회적경제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은 상황임
 - 2008년 연구¹⁰⁾를 비롯한 각종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2003년 기준 제3섹터의 경제규모는 GDP의 0.9% 수준이며, 고용규모는 전체 취업자의 4%~6%로 추정됨
 - 물론 한국 사회적경제의 고용규모 등에 대한 추정결과는 유럽연합이 발표하는 각국의 추정결과와 비교할 때,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임
 - 하지만 한국 사회적경제가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규모는 GDP 대비 비중이나 일자리 비중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7) 노대명(2007), "한국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의 현황과 과제 : 사회적경제의 정착과정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제5권 2호

8) Jose Luis Monzon Campos & Rafael Chaves Avila(2012), The Social Economy in the European Union,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9) Cecile Bazin, Amadou Ba et.al.(2014), "Economie Sociale : Bilan de l'Emploi en 2013", Recherches & Solidarites, 10 juin 2014

10) 이 주제에 대해서는 김혜원 · 박찬임 · 황덕순 · 김용영 · 박중현 · 전승훈(2008), 제3섹터 부문의 고용창출 실증연구, 노동연구원 참조

■ 한국 사회적경제에서 기존 협동조합을 포함시킬 것인지는 중요한 쟁점

○ 최근까지 전문가들은 기존 협동조합을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간주하는데 주저해 왔음. 기능적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특성을 상실했다는 판단 때문임

○ 하지만 기존 협동조합의 경제규모와 고용규모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임 :

- 2010년 현재 조합원 수¹¹⁾는 새마을 금고 1,945만 명, 신협 558만 명, 농협 245만 명, 산림조합 48만 명, 생협 43만 명, 수협 16만 명 등 6개 협동조합 조합원 총수가 2,855만 명에 이르고 있음. 그리고 농협, 신협, 새마을 금고 등 상호금융의 자산 총액은 2009년 현재 355조원을 넘어서고 있음¹²⁾

○ 향후 사회적경제의 양적 성장을 위해서는 기존 협동조합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것임. 그 중에서도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은 주목해야 할 조직

- 비록 영리기업들의 추격을 받아 매출이 감소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있어 사회적경제의 자립기반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임

■ 지금 우리사회가 주목하는 것은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새로운 조직들임

○ 자활사업을 통해 설립된 자활기업은 최근 성장이 멈춘 상황임

- 그럼에도 자활기업은 낙후지역 등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어, 향후 지역재생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업의 참여를 촉진 하는 단초가 될 수 있음.

〈표 1〉 자활기업의 지역별, 업종별 분포 (2012년 12월 현황)

	계	수도권	광역시	기타 도
보건복지	29.8	31.5	37.9	24.3
식품외식	15.0	13.1	13.8	17.0
생산가공	1.7	1.8	1.9	1.6
건설인테리어	21.3	15.9	14.1	29.0
대인서비스	22.7	25.9	21.9	21.0
유통사무	6.1	8.8	5.8	4.4
기타	3.3	3.0	4.5	2.8
계 (전체 대비 %)	100.0 (100.0)	100.0 (31.0)	100.0 (24.3)	100.0 (44.7)

자료: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내부자료, 자활사업 현황, 2013. 업종과 지역은 필자가 구분

○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주목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

-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공급을 결합시키는 과정에서 낙후지역 등에도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참고로 사회적기업 중 상당수(기타로 분류된 사회적기업의 34%)는 농수축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업종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재생 전략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음

11) 조합원 수란 읍급근로자 규모와 다른 개념으로 사회적경제의 경제 및 고용규모를 추정함에 있어 보완적 지표라는 점을 언급해 두고자 함.

12) 김종걸 · 전영수(2012),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활성화 선진사례 연구: 한국과의 비교분석, 새사회전략정치연구원 참조

〈표 2〉 인증 사회적기업의 지역별, 업종별 분포 (2014년 9월 현황)

	전체	수도권	광역시	기타 도
교육서비스	6.8	6.4	11.8	4.3
보건복지	17.0	17.8	17.6	15.8
문화예술	15.7	19.1	14.5	12.9
환경	15.6	13.1	13.7	19.4
산림보전관리	0.2	0.0	0.0	0.5
기타	43.9	42.2	42.0	46.7
계 (전체 대비 %)	100.0 (100)	100.0 (38.6)	100.0 (20.9)	100.0 (40.5)

자료: 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 사회적기업 현황, 2014년 9월 24일, 업종과 지역은 필자가 구분

○ 마을기업 또한 광역시도가 아닌 기타 도 지역에 집중분포하고 있음

- 마을기업의 업종별 분포 등 세부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이들 기업은 지역재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농어촌지역 및 낙후지역에 상당수 분포하고 있어, 향후 지역재생 전략과의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표 3〉 마을기업의 지역별 분포와 일자리 수 (2013년 12월 현황)

	합계	수도권	광역시	기타 도
마을기업 수 (전체 대비 %)	1,119 (100.0)	297 (26.5)	255 (22.8)	567 (50.7)
일자리 수	10,117	2,412	1,864	5,841

자료: http://www.마을기업박람회.org/story/apply_list.php (2014년 10월 3일 추출)

■ 협동조합기본법 이후 설립된 협동조합의 지역분포를 보면, 대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 협동조합은 2012년 10월 2,750개에서 2014년 2월 3,816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하지만 지역적 분포를 보면, 같은 기간 설립된 협동조합의 46%가 수도권 지역에 분포하며, 광역시도 지역에 71%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최근 설립되는 일반협동조합이 지역적으로 편포되어 있으며, 시민사회의 다양한 수요와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을 개연성을 말해 줌

〈표 4〉 협동조합의 지역별, 업종별 분포 (2014년 2월 현황)

	전체	수도권	광역시	기타 도
교육서비스	11.8	14.4	12.1	7.4
보건복지	4.3	4.5	5.2	3.3
도소매업	28.1	28.2	31.4	25.0
농축산업	12.2	6.2	7.3	26.1
제조업	8.5	9.1	8.6	7.6
개인서비스	7.4	5.5	10.3	7.8
기타	27.7	32.2	25.1	22.7
계 (전체 대비 %)	100.0 (100)	100.0 (46.4)	100.0 (24.8)	100.0 (28.9)

주: 1) 지역구분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서울을 제외한 광역시), 기타 도(강원,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 제주도)
 자료: 신나는조합 홈페이지, 협동조합 현황, 2014년 2월 28일 현재, 업종과 지역은 필자가 구분

- 사회적기업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중시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역분포 또한 동일한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음. 사회적협동조합은 2014년 2월 현재 약 128개가 설립되었는데, 70.3%가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4. 사회적경제의 쇄신과 지역재생 전략의 연계

■ 한국의 사회적경제 기업들은 양적 확대보다 질적 쇄신이 시급한 상황

- 전통적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영리기업과 다름없는 운영방식과 조합원 중심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적경제 기업과의 협력이 필요
 - 수익창출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경제의 원칙과 가치에서 멀어져 있고, 사회적 유용성이라는 공익적 가치와도 멀어져 있기 때문임. 이는 사회적경제가 시민사회 기반을 상실했음을 의미함
- 새로운 사회적경제 기업들은 정부지원에 대한 의존성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며 지속 가능한 경제사회적 기반을 구축해야 함
 -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은 기초자치단체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기존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기피해 왔던 공익적 역할을 담당해 왔다는 점에 강점이 있음. 하지만 정부지원에 의존하고 있다는 구조적 취약성에 노출되어 있음
- 협동조합기본법 이후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은 아직 지역사회에서 경제사회적 기반을 구축하지 못한 걸음마 단계임
 - 특히 인증절차가 복잡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증가속도는 매우 더딘 상황임. 그렇다고 인증조건을 완화하여 그 수를 늘리는 것도 능사는 아님. 이 조직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향후 제도개편 논의는 역사적 경험에 주목해야 할 것임¹³⁾

- 먼저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정책이 밑으로부터의 수렴보다는 위로부터의 지시라는 과거의 방식을 답습해서는 안될 것임.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밑에서부터 수렴하는 끈기 있는 준비가 필요함
- 이어 정부의 지원을 통해 서둘러 사회적경제 기업의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기보다 전통적 사회적경제 조직과 새로운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사회적 토대를 구축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임
- 끝으로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체적인 사업을 고민해야 할 것임. 그것은 지방정부와 사회적경제 기업이 지역재생이라는 구체적 목표를 중심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함

13) 사회적경제 기본법과 관련 논의는 다음 문건을 참조 : 새누리당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2014년 4월 10일; 국회 사회적경제연구포럼 외, 착한 경제, 어떻게 만들 것인가 : 사회적 가치 기본법 도입의 의미와 전망, 2014년 2월 10일; 문보경(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경제 진영의 논의상황", 2014년 5월 8일; 김기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지금이 적기다", 한국협동조합연구소, 2014년 5월 14일

■ 한국 사회적경제의 쇄신은 <지역재생 전략>¹⁴⁾과의 결합에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경제의 토양은 바로 지역임. 그리고 그것이 해결해야 할 문제점 또한 그곳에 있음. 불균등발전으로 도시외곽과 농촌 등지에서 낙후문제가 발생하고, 노인, 장애인, 외국인노동자 등 취약계층이 밀집되어 사회적 배제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

○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주목하고 있는 새로운 사회적경제 기업의 육성은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의 지원정책 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지역사회에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실질적인 순환경제 체계를 구축하게 하는 조치가 필요

○ 사회적경제 기업이 지역주민의 참여를 전제로 그 욕구에 대응하는 것은 지역개발을 상권이나 아파트건설이라는 협소한 관점을 넘어 생산과 소비를 아우르는 지역재생 전략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임

■ 지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적경제 기업이 어떤 역할을 담당하지 논의할 시점임

○ 중앙정부는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에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지방정부는 개발사업 일변도에서 벗어나 <경제사회적 지역재생 전략>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해야 할 것임

○ 신·구(新·舊)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정부지원이나 공적지원에 대한 호소를 넘어 생산자와 소비자가 협력하는 지역단위의 순환경제체계를 구축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임

– 그것은 지역단위에서 협동조합과 신 사회적경제 기업이 협력하는 <수평적 네트워크>와 업종별로 지역 조직과 전국조직이 협력하는 <수직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특히 낙후지역에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 왔던 자활기업이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은 그 목적에 맞게 기능하도록 지원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은 지역재생 전략을 통해 “수요자와 공급자를 통합시켜 창출된 부가가치를 순환시키고 이 과정을 통해 지역의 사회자본을 축적시키고 궁극적으로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유도” 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임¹⁵⁾

14) 여기서 지역재생은 경제중심의 지역개발사업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음. 즉, 지역의 경제, 정치, 사회적 재구성을 지칭하는 것임.

15) 이 표현은 마을기업의 지향점에 대해 다음 전문가들이 언급한 문구임. 이는 사회적경제와 지역재생전략이 결합해야 할 이유와 방향을 잘 보여주고 있음. 전대욱 · 박승규 · 최인수(2012), 지역공동체 주도의 발전전략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참조

집필자 | 노대명 (사회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 문의 | 02-380-8119

발행인 | 최병호 발행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22-705)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 | TEL 02)380-8000 | FAX 02)352-9129 | <http://www.kihasa.re.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의 발간자료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ihasa.re.kr/html/jsp/publication/periodical/focus/list.jsp>